

#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평가와 전망: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정형곤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동북아경제본부장 | hgjeong@kiep.go.kr

## I. 들어가는 말

2017년은 북한 당국이 역사상 가장 강력한 경제제재에 직면한 해였다. 2016년 두 차례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에 이어 2017년에는 네 차례의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있었다.<sup>1)</sup> 시간이 지날수록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강도는 더욱 더 강력해지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북한 주변국의 양자제재 역시 그 범위가 넓어지고 강력해지고 있다.

특히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보다 더 목표 지향적이었다. 즉, 이전의 제재에 비해 개별 품목에 대한 수출입 통제가 더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북한의 대외무역뿐만 아니라 북한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로 강화되었다. 우선 두드러진 제재는 UNSCR 2371호(2017. 8. 5)이다. UNSCR 2371호는 북한으로부터의 무연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특별히 UNSCR 2371호는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의 고용을 현 상태에서 동결시킴으로서 북한 당국의 외화 획득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신규 합작사업을 금지했고 기존 사업의 확대 역시 금지했다. 북한 당국의 6차 핵실험 이후 발표된 UNSCR 2375호(2017. 9. 11)는 북한의 수출입에 대한 제재를 더욱 더 강화했다. UNSCR 2375호는 2017년 4분기의 북한 원유와 정제유의 수입량을 50만배럴로 제한했으나 2018년의 북한의 정제유 수입량은 현 공급량의 55% 수준인 200만배럴로 제한했고 원유의 경우는 현재 수준인 400만배럴로 동결했다. 또한 NGL(Natural Gas Liquid)

1) 제7차 UNSCR 2356(2017. 6. 2), 제8차 UNSCR 2371(2017. 8. 5일), 제9차 UNSCR 2375(2017. 9. 11), 제10차 UNSCR 2397(2017. 12. 22).

과 콘덴세이트의 대북수출은 전면 금지시켰다. UNSCR 2375호는 또한 식물 및 의류 완제품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고,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신규취업 허가를 금지했으며, 기존 파견 노동자들의 비자갱신도 금지시켰다. 아울러 북한과의 합작사업도 금지시킴과 동시에 기존 합작사업의 경우 120일 이내에 폐쇄하도록 하였다. 화물 이동 역시 제재를 강화했는데, 북한 선박의 공해상에서의 화물 이동 역시 금지했다.

11월 29일 북한의 ICBM 발사 이후 대응조치로 발표된 UNSCR 2397호(2017. 12. 22)는 북한 노동자를 결의안 통과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본국으로 소환하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원유의 대북수출에 있어서도 민생용의 경우만 매년 400만배럴 이하로 허용했으며, 석유 제품에 대해서도 오직 민생용으로만 매달 30일마다 유엔안보리에 보고하는 조건으로 연 50만배럴까지만 수출하도록 제한했다. 더 나아가 2397호는 식품이나 농산품(HS코드 07, 08, 12) 기계류(HS코드 84, 85), 전자기기(HS코드 85), 토석류(HS코드 25), 목재(HS코드 44), 선박(HS코드 89) 수입을 전면 금지시켰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와 함께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양자제재도 강화했다. 우선 2017년 8월에 이란과 러시아와 함께 북한에 대한 제재 현대화법을 제정했고, 재무부 제재대상을 확대 발표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더 강화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표하여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이나 개인도 제재대상에 포함시켰다.<sup>2)</sup>

상기 언급한 대북제재와 관련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과 북한경제는 얼마나 영향을 받았을까? 본고는 이러한 질문을 토대로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현황을 자세히 분석하고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과 북한경제를 전망하고자 한다.

## II. 북한의 대중무역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에 대해 분석하기 이전에 먼저 고려해야할 점을 언급하고자 한다. 우선 북한의 수출입은 90% 이상이 중국과의 무역이다. 따라서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은 북중 수출입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아울러 앞서 언급했듯이 최우선 관심사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에 북한의 2017년 수출입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가,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분석대상을 정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의 수출입에 대해서 품목별 제재가

2) 국제사회의 다자 또는 양자제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임소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KIEP 기초자료, 2018. 에서 자세히 기술하고 있음.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한의 수출입 전체에 대한 제재가 아니고 사치품과 군수물자나 이중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북한으로의 수출을 금지하고 있으며, 북한의 외화 수입과 관련된 제품이나 서비스의 대북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관심사인 대북제재 효과는 이들 제한 품목군에 한해서 분석해야 한다. 물론 제재 대상이 아니더라도 간접적인 제재 효과가 있긴 할 것이나, 이 효과는 시간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에 있어서 제재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은 제재의 직접적 효과, 즉 비교적 단기적인 차원의 효과를 보려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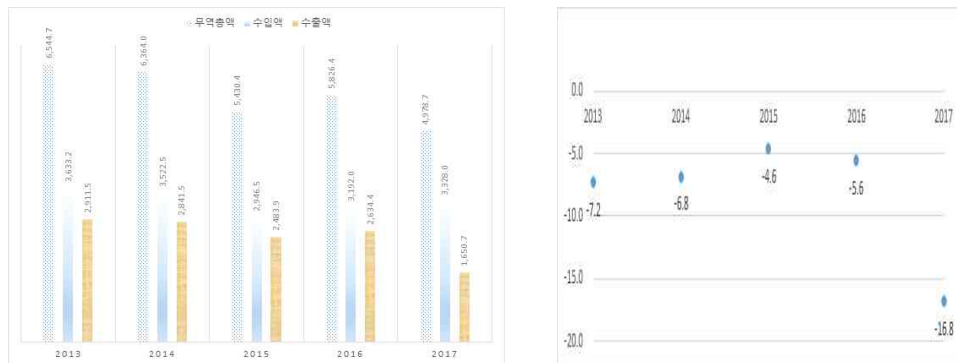
## 1. 2017년 북한의 대중무역 현황

2017년 북한의 대중 무역액은 49.78억달러로 2016년 58억달러에 비해 약 8.5억달러가 감소하여 전년대비 14.5%가 줄었다. 먼저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6년 26.3억달러에서 37.3% 감소한 16.5억달러로 감소하였다. 반면 수입은 2016년 31.9억달러에서 1.4억달러 증가한 33.3억달러를 기록하여 전년대비 4.3% 증가하였다.

아래 [그림 1]에서 보는바와 같이 북한의 무역액은 2013년 65.5억달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에 있고 북한의 대중수출 폭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 2017년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지난해에 비해 회복되었고 2013년과 2014년 평균치에 근접한 것을 볼 수 있다. 수출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북한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도 2017년에는 16.8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1] 북한의 대중국 수출입 동향(좌)과 무역수지(우)

(단위: 백만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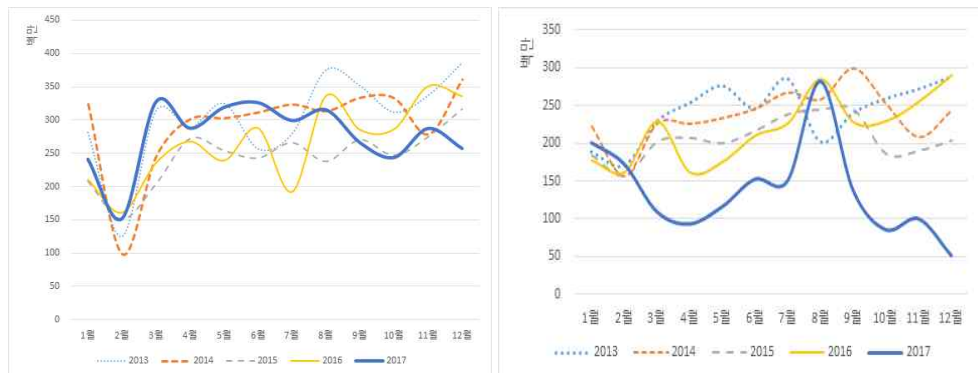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 2. 월별 대중무역 현황

다음 [그림 2]의 (좌)는 2017년 북한의 대중 월별 무역동향을 최근 5년간 추세와 비교한 것이다. 대체로 북한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연초에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그 수입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2017년 북한의 대중수입은 2월부터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5년 치의 추세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다 8월 이후 증가추세가 꺾이고 있다.<sup>3)</sup> 하반기에 들어 북한의 대중수입이 추세상으로 감소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2017년 북한의 대중수입 총액은 최근 5년 평균치 33.2억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아래 [그림 2]의 (우)는 2017년 북한의 월별 대중수출 변화를 최근 몇 년간 추세와 비교한 것이다. 월별 수출 역시 수입처럼 연초에는 낮은 금액으로 시작하여 하반기로 갈수록 그 금액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2017년 월별 수출은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최근 동향과는 달리 1월 이후부터 급격히 하락한다. 4월 이후 반등은 하지만 최근 5년 간 같은 달의 추세치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출액이며, 8월에 들어 급격히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지만 9월 이후 다시 급락하여 12월에는 최근 5년치 월별 수출액과 현격히 차이가 나는 5천만달러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림 2]의 월별 대중 수출입 추세를 비교해 보면 북한의 수입은 수출에 비해 제재효과가 더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 2017년 북한의 대중 월별 수입(좌) 및 수출(우) 동향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3) 아래 그림에서는 비교의 편의를 위해서 최근 3년치의 월별 대중 수입량만을 표기했으나, 2013년 이후 5년 간 월별 대중수입 추세를 비교해 보면 2017년 상반기의 대중수입은 최근 5년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 3. 주요 품목별 대중무역 현황

#### 가. 주요 수출품목

앞서 언급했듯이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6.5억달러로 2016년 26.3억달러에 비해 37.3% 감소하였다. 아래 <표 1>은 품목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다. 상위 6개 품목이 북한의 대중수출의 약 85%를 차지한다.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년 북한의 대중수출은 모든 품목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의 제1 대중수출 품목은 의류와 그 부속품으로 분류되는 HS코드 62군(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제외)이다. 이 품목군은 4.97억 달러를 수출했으나 전년 대비 18.8%나 감소하였다. 절대적 수출량은 감소했으나 <표 2>에서와 같이 동 품목이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오히려 전년대비 크게 증가해 30%를 차지하고 있다. 대중수출 2위 품목은 무연탄이 포함되어 있는 HS코드 27 품목(광물성연료·광물유(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군 이다. 동 품목군은 무연탄에 대한 제재가 시행되기 이전인 2016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의 제1 수출 품목군으로 북한 전체 대중수출에서 45% 정도를 차지했던 주요 수출품목이었다. 그러나 2017년의 경우 전년대비 65.2%나 감소해 4.12억달러 밖에 수출을 못했다. 2017년 북한의 총 수출에서 동 품목군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급감해서 무연탄에 대한 제재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출 3위를 차지한 HS코드 26(광·슬래그·회) 품목군은 2위 품목군에 비해 수출액이 크게 떨어진 1.87억달러를 수출했고 전년대비 17% 정도 감소했다. 전체 북한의 대중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1% 가량 된다.

HS코드 62에 해당하는 어류·갑각류의 수산물 역시 대중 수출액이 전년대비 16%나 감소했고 대중 수출액은 1.63억달러(대중수출의 5%)에 그쳤다. 반면 식용 과일류(HS코드 08)는 7,900만달러로 그 수출액은 적지만 전년대비 55%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아울러 HS코드 61 품목군(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 적용) 역시 대북제재로 인해 전년대비 42%나 감소한 6,500만달러를 수출했다. 이는 북한 대중수출의 4% 정도의 수출량이다.

〈표 1〉 최근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품목 실적 비교(HS2단위)

(단위: 천달러, %)

	분류		2014		2015		2016		2017	
	품목	HS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수출액	증가율
1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제외)	62	622,034	24.6	633,206	1.8	611,500	-3.4	496,741	-18.8
2	광물성연료·광물유(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7	1,146,386	-17.5	1,057,042	-7.8	1,187,115	12.3	412,722	-65.2
3	광·슬래그·회	26	339,349	-18.3	204,662	-39.7	225,351	10.1	187,493	-16.8
4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03	143,257	25.9	108,476	-24.3	190,094	75.2	162,822	-14.3
5	식용 과일; 견과류, 껍질을 벗기는 열매나 멜론 등	08	111,277	243.3	43,033	-61.3	50,833	18.1	78,893	55.2
6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 적용)	61	118,985	35.4	166,097	39.6	111,872	-32.6	65,254	-41.7
수출 총액			2,841,476	-2.4	2,483,944	-12.6	2,634,400	6.1	1,650,670	-37.3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표 2〉 품목별 대중수출 비중 비교(HS2단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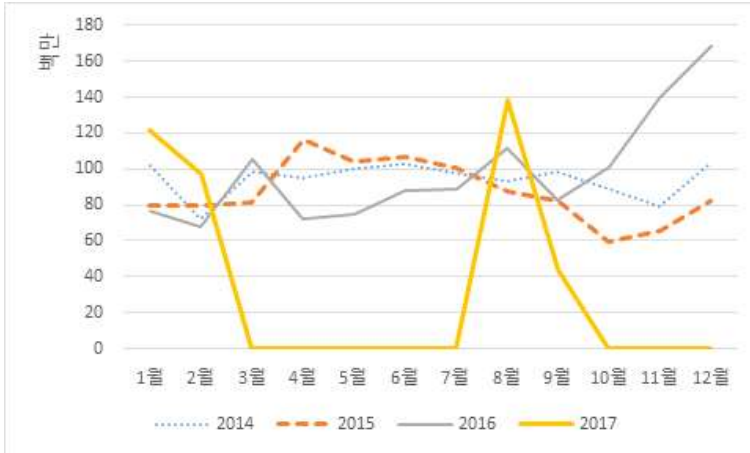
	분류		2014	2015	2016	2017
	품목	HS				
1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제외)	62	22	25	23	30
2	광물성연료·광물유(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	27	40	43	45	25
3	광·슬래그·회	26	12	8	9	11
4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03	5	4	7	10
5	식용 과일; 견과류, 껍질을 벗기는 열매나 멜론 등	08	4	2	2	5
6	의류와 그 부속품 (메리야스편물·뜨개질편물 적용)	61	4	7	4	4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 1) 무연탄

북한산 무연탄(HS코드 270111)은 UNSCR 2321호(2016. 11. 30)와 중국 상무부 고시 12호(2017. 2. 17)에 의해 2017년 3월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아래 [그림 3]에서와 같이 동 품목은 2016년 하반기부터 수출이 급격히 증가해 2016년에 11.8억달러를 중국으로 수출했다. 무연탄은 북한의 수출에서 약 45%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그림 3] 북한의 대중 무연탄 수출 비교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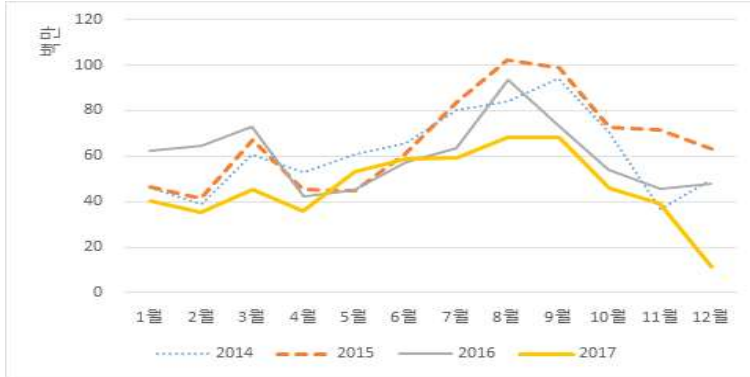
품목이었다. 그러나 북한 무연탄의 대중수출은 2016년을 정점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7년에는 전년대비 66% 감소한 4억달러를 수출했다. 동 품목은 1월과 2월 그리고 8월과 9월을 제외하고는 대중 수출량 제로(0)를 기록하였다.

## 2) 의류

북한의 의류 품목(HS코드 61, 62)은 UNSCR 2375호(2017. 9. 11)와 중국 상무부 고시 52호(2017. 9. 23)에 의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sup>4)</sup> [그림 4]에서 보는바와 같이 2015년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은 약 8억달러에 달했다. 그러나 2016년도에는 22.3% 감소해 7.2억달러로 줄었고, 2017년도에는 동 품목에 대한 제재로 인해 10월부터 급격히 하락하여 총 5.6억달러만을 수출했다.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 대중 수출액의 감소로 의류는 북한의 대중 수출액중 34%를 차지했다.

4) UNSCR 제재에서 HS코드 61과 62의 하부 단위의 일부는 제재 품목이 아님.

[그림 4] 북한의 대중 의류 수출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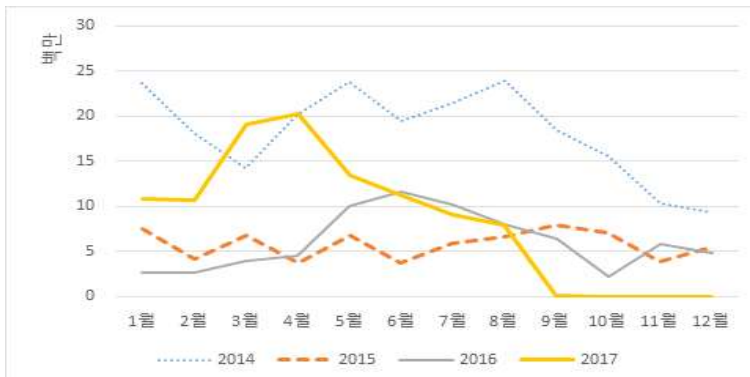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 3) 철광석

철광석(HS코드 71, 2601)은 UNSCR 2371호(2017. 8. 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2017. 8. 14)에 의거 2017년 9월부터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면 금지된 품목이다. 철광석은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그 비중(2016년 기준)이 타 광물자원에 비해 높지 않다. 2016년 북한 철광석의 대중 수출액은 0.73억달러였다. 이는 타 광물자원의 대중수출과 비교할 때 큰 비중은 아니었으나, 2014년 수준으로 급격히 증가했고 4월 이후 다시 감소추세로 전환되어 제재가 시작된 9월부터는 급격히 감소했다. 총액상으로 보면 북한 철광석의 2017년 대중수출은 총 1억달러로 증가하여 2016년 대비 43% 증가하였다.

[그림 5] 북한의 대중 철광석 수출액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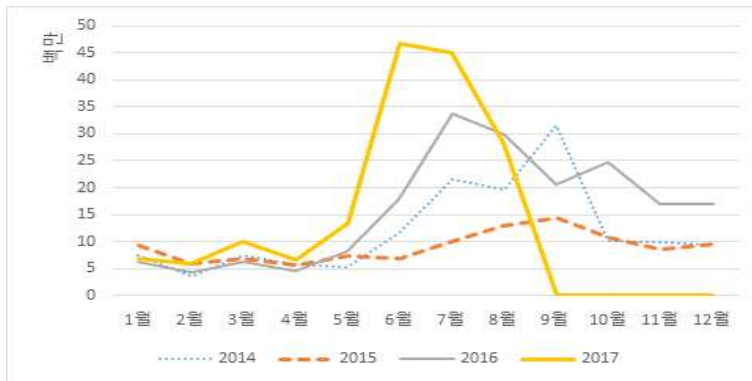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 4) 수산물

수산물(HS코드 03)은 UNSCR 2371호(2017. 8. 5)와 중국 상무부 고시 40호(2017. 8. 14)에 의해 북한으로부터의 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2016년에는 중국으로 북한산 수산물이 약 1.9억달러 수출되었고, 이것이 북한의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2% 정도였다. 제재의 영향으로 2017년 북한 수산물의 대중수출은 1.6억달러로 감소했으나 오히려 북한의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9%를 기록했다.

[그림 6] 북한의 대중 수산물 수출액 비교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 나. 주요 수입품목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33.3억달러로 최근 5년 평균치 수준을 회복하였다.

아래 <표 3>은 품목별 북한의 대중 수입액이다. 상위 5개 품목이 북한의 대중수입에서 38%를 차지한다. 앞서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상위 5개 품목이 총 대중수출의 85%를 차지하는 것과 달리 수입의 경우 그 품목의 집중 현상이 수출에 비해 상당히 적은 것을 볼 수 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제1품목군은 HS코드 85에 해당되는 전기기기와 그 부품들로, 총 수입액은 3.4억달러였다. 이 품목군은 최근 꾸준히 제1수입 품목군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전체 북한의 대중수입에 있어서 약 10%를 차지한다. 두 번째 수입 품목군은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으로 총 수입액은 2.7억달러였고 이 품목들의 수입은 전년대비 미미(-0.4%)하게 감소하였다. 세 번째 수입품목은 플라스틱과 그 제품(HS39)군으로 이 품목들의 수입은 13.1% 증가해 전년대비 비교적 많이 증가하였다. 동

제품군이 북한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 정도이다.

네 번째 수입품목은 인조필라멘트·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HS54) 품목으로 전체 수입에서 약 7%의 비중을 차지하고 2017년에는 2.2억달러를 수입했다. 동 품목의 수입은 크게 증가해 전년대비 17%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수입품목은 전체 대중수입에서 6%를 차지하는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HS87)이다. 이 품목군의 수입액은 2억달러 조금 넘고, 전년대비 20.6%나 감소하였다.

〈표 5〉는 2017년 북한의 대중 수입량에 있어서 큰 변화가 동반된 품목군을 정리한 것이다. 가장 증가폭이 높은 수입품목을 냉동명태(HS 030367)로, 전년대비 62% 증가하였다. HS코드 03군에 해당하는 수산물 역시 수입이 37%나 증가했다.

〈표 3〉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 비교(2014~17년)

(단위: 천달러, %)

	분류		2014		2015		2016		2017	
	품목	HS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1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	419,769	65.3	332,361	-20.8	315,479	-5.1	338,133	7.2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	310,260	17.9	252,094	-18.7	268,607	6.6	267,599	-0.4
3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193,431	36.2	168,037	-13.1	204,533	21.7	231,388	13.1
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54	166,278	14.2	151,664	-8.8	187,042	23.3	218,834	17.0
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	210,517	-12.2	196,189	-6.8	254,802	29.9	202,422	-20.6
수입총액			3,522,515	-3.0	2,946,464	-16.4	3,192,031	8.3	3,328,032	4.3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표 4〉 품목별 대중 수출 비중(HS2단위, 2014~17년)

(단위: %)

	분류		2014	2015	2016	2017
	품목	HS				
1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	12	11	10	10
2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	84	9	9	8	8
3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	5	6	6	7
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과 이와 유사한 것	54	5	5	6	7
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	6	7	8	6

자료: KITA 통계로 작성.

인테리어용 내외장재(HS 69) 역시 전년대비 41%나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아울러 가구와 건축용 목재(HS 94)도 전년대비 24%나 상승했는데, 이는 김정은 집권이후 국내경기부양을 위한 '건설업에 대한 정책적 독려'에 따른 수요증가로 해석된다. 섬유류(HS 54, 55, 56, 60)와 의류(HS 60)는 전체적으로 각 품목마다 전년대비 20% 정도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수요에 따른 원자재의 수입으로 해석할수도 있으나 일부의 경우 다시 중국으로 재가공되어 수출되었다. 2017년의 경우 섬유류에 대한 수출제재로 인해 이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중 의류(HS 61)수출은 전년대비 13% 감소했다.

가장 큰 폭의 감소를 보이는 품목군은 광물유류(HS코드 27: 광물성연료·광물유(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물질, 광물성 왁스)로 전년대비 50.9% 감소하였다. 앞서 언급했듯이 이는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 때문이다. 철강류(HS 72)와 운송수단(HS 87)의 수입도 각각 26%와 21% 감소하였다. 과일과 견과류(HS 08)의 수입은 33% 감소하여 두 번째 큰 폭으로 수입이 하락한 품목이다. 그 밖에 고무류와 섬유류의 수입도 크게 감소하였다.

<표 5> 북한의 대중 수입품목 비교(2014~17년)

(단위: 천달러, %)

	2014		2015		2016		2017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수입액	증감률
냉동명태(HS 030367)	12,167.1	70.2	19,303.1	58.6	23,253.6	20.5	37,647.8	61.9
인테리어용 내외장재(HS 69)	48,082.9	41.5	49,589.4	3.1	46,589.5	-6.0	65,788.4	41.2
수산물(HS 03)	73,290.8	12.8	84,833.5	15.7	74,343.3	-12.4	102,154.7	37.4
가구와 건축용 목재(HS 94)	56,313.1	59.5	42,980.0	-23.7	48,608.8	13.1	60,439.5	24.3
유지류(HS 15)	112,761.7	30.8	104,627.0	-7.2	99,498.1	-4.9	121,549.5	22.2
섬유류(HS 56)	55,749.0	12.8	41,138.9	-26.2	50,101.5	21.8	60,103.8	20.0
섬유류(HS 60)	89,706.2	35.8	75,468.3	-15.9	84,494.5	12.0	101,041.8	19.6
의류(HS 60)	89,706.2	35.8	75,468.3	-15.9	84,494.5	12.0	101,041.8	19.6
섬유류(HS 54)	166,277.7	14.2	151,664.2	-8.8	187,042.4	23.3	218,834.3	17.0
플라스틱류(HS 39)	193,430.8	36.2	168,037.3	-13.1	204,533.3	21.7	231,388.5	13.1
섬유류(HS 55)	96,174.9	-1.8	62,764.6	-34.7	71,183.5	13.4	79,650.5	11.9
의류(HS 61)	114,717.8	34.8	96,104.8	-16.2	134,823.4	40.3	117,119.4	-13.1
운송수단(HS 87)	210,516.5	-12.2	196,188.9	-6.8	254,801.7	29.9	202,422.3	-20.6
고무류(HS 40,)	85,970.5	4.3	75,296.4	-12.4	79,040.5	5.0	59,522.1	-24.7
철강류(HS 72)	108,900.5	17.7	111,789.6	2.7	115,288.5	3.1	85,189.0	-26.1
과일과 견과류(HS 08)	31,944.8	74.2	54,384.7	70.2	99,629.1	83.2	66,973.7	-32.8
광물유류(HS 27)	191,430.6	-74.2	147,294.5	-23.1	141,569.0	-3.9	69,506.2	-50.9

자료: KITA 통계를 활용하여 작성.

### III. 나가는 말

본고에서는 2017년 북한의 대외무역 관계를 북중무역을 중심으로 최근 통계와 비교하면서 분석해 보았다. 본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17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효과가 북한의 대중수출에 있어서 현격히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현재와 같은 제재가 지속된다면 2018년에는 제재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는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만을 크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중국이 국제사회와 같은 목표로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한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통계상으로 나타나는 현재까지의 상황을 볼 때 중국도 2017년에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제재가 2018년에도 지속된다면 다음과 같은 경로로 북한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2018년에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관건은 여전히 중국인데, 무역에 있어서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이 2017년도에 발표한 상무부 고시를 근거로 북한에 대한 제재를 지속한다면 2018년 북한의 교역은 2017년보다 현저하게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북한 대중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5대 품목이 제재품목으로 지정되어 있어, 2018년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017년 대비 큰 폭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통계상으로 나타난 북한의 2017년 대중수입 제재 효과는 크지 않았다. 이는 수출 품목만큼 수입제재 품목이 포괄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치품 등 북한에 대한 수출 금지 품목도 북한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6%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sup>5)</sup> 따라서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민생과 관련된 최소한의 품목을 제외하고 북한의 수입품에 대한 제재를 더욱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대다수 북한의 생필품 물가가 시장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구조에서 국제사회의 북한에 대한 수입제재는 북한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하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될 경우 2018년 북한의 대외무역과 경제전반에 다음과 같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2018년 북한의 외화수입은 현격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북중간 무역수지 적자도 대폭 증가될 개연성이 매우 높으며, 해외 노동자 파견을 통해 얻었던 달러 수입도 2018년부터 급격히 감소될 전망이다. 이미 북한 당국의 외화 수입 감소로 당장 필요로 하는 자본재와 에너지 수입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 전반의 산업생산에 영향을 미치게 될

<sup>5)</sup> Jeong, Hyung-gon and Bang Hokyung, "The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s Luxury Goods Imports," KIEP Staff paper 17-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7. 참조.

것이다. 특히 외화자산의 감소는 식량과 소비재의 수입 감소를 초래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북한 주민의 생활을 보다 더 어렵게 할 것이다.

정상적인 무역거래도 감소하고 있고, 외국 금융기관이나 업체들이 북한의 기관과 무역회사들과의 정상적 무역사업도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해외 사업에 있어서 어려움이 더 커질 것이다. 더욱이 북한기업의 해외자산 및 은행계좌 동결에 따른 해외자산의 감소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며, 조총련의 대북송금 등을 포함한 기타 무역외 거래 역시 상당부분 감소하게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제재 효과가 더 가시화될 2018년 북한의 대외경제 여건은 현재보다 더 악화될 것이 분명하다. 2018년은 김정은 집권이후 추진해 온 경제적 분권화와 이를 통한 경제운영에 있어서의 다양한 정책적 시도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제재만으로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북 유화정책으로 전환하여 북한의 핵폐기를 유도해 낼 수도 없다. 따라서 가장 현명한 방법은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실행하면서 동시에 북한에 적절한 당근을 제공하여 핵폐기를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이 현재 국제사회가 제공하는 당근을 받아들이는 편이 향후 경제제재나 기타 군사적 압박을 당하는 것보다 더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재안을 보여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강력한 제재안과 동시에 국제사회는 북한이 받아들일 수 있는 포괄적인 당근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에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제시하는 대북 인센티브가 확실히 이행될 수 있다는 확신을 북한에 주는 것이다. 북한이 가장 원하는 것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고 미국과의 협상인데, 미국은 북핵문제의 핵심 당사자로서 Nunn-Lugar법<sup>6)</sup>에 기초한 ‘협력적 위협 감소 프로그램(CTRP)’과 같은 북한에 대한 인센티브를 법제화하고, 이를 통해 보상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보장하며 이 법안에 지원 내용과 기간, 규모, 효과 등을 명확히 명시해야만 한다. 또한 ‘제재를 위한 제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은 북한과의 협상 타결 시 제공될 수 있는 정치, 안보, 외교적 보상에 대해서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정치적 보상으로 미·북 수교와 평화체제 수립, 경제적 보상으로 인도적 대북지원, 대북 투자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경제적 보상과 함께 북한이 비핵화 공약을 위반할 경우 즉시 추진될 수 있는 매우 강력한 제재 메커니즘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6) Nunn-Lugar법은 지난 1990년대 초, 미 상원의 리처드 루거(Richard Lugar) 의원과 샘 님(Sam Nunn)의원의 주도로 만들어진 법안으로 미국은 이 법안을 근거로 한 프로그램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즈베키스탄 등 옛 소련의 핵무기 해체를 돕기 위해 자금과 기술, 장비, 인력을 지원하도록 규정한 바 있다.

## 참고문헌

- 임소정,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현황과 전망」, KIEP 기초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정형곤·김병연·이석, 『북한의 시장화 현황과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연구보고서 12-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 최장호, 「2017년 북중 무역평가와 전망」, 『오늘의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8.
- Jeong, Hyung-gon, “Initial Conditions, Economic Performance, and Reform Prospects in North Korea,”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 26, No. 4, 2013.
- Jeong, Hyung-gon and Bang Hokyung, “The Impact of UN Sanctions on North Korea’s Luxury Goods Imports,” KIEP Staff paper 17-10,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2017.

### <웹사이트>

- UN Comtrade(<https://comtrade.un.org>, 접속일: 2018. 2. 24.).
- 한국무역협회(<http://www.kita.net>, 접속일: 2018. 2. 24.).
- 통일부, 북한정보포털(<http://nkinfo.unikorea.go.kr>, 접속일: 2018. 2. 24.).